

창업규정

(RR1504)

제정 1998.12.23

개정 2000.12.27

2000.12.29

2001.12.15

2002. 3.28

2002. 9. 2

2002.11.28

2003. 7.25

2007.11.28

2009. 3.23

전부개정 2013.12.27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 이라한다) 구성원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 3 조에 따른 교직원을 말한다.
2. “학생” 이라 함은 학부생,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을 말한다.
3. “교직원 창업” 이라 함은 교직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고, “설립” 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및 제 3 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학생 창업” 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 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창업자” 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직원과 학생을 말한다.
8. “창업기업” 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주관부서) 이 규정의 주관부서는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제 2 장 교직원창업

제 4 조 (교직원 창업 승인신청의 자격)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직원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자
2. 3년 미만의 근속 교직원으로서 창업 시 과학기술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 5 조 (교직원 창업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창업신청자 소속 학과/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교직원 창업 승인 신청서
2. 별표 2의 교직원 창업 사업계획서
3. 별표 3의 교직원 창업 대상 기술설명서
4. 학과/전공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심의자료 등

제 6 조 (교직원 창업의 심의 및 승인) ① 창업신청을 받은 소속 학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원의 경우 학과/전공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직원의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서에 서류를 제출한다.

1. 창업 휴/겸직 허용여부
 2. 겸직허가 시 기업 활동 시간과 교육 연구 활동 시간의 비율과 그에 따른 보수
-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
4. 기타 창업과 관련된 사항

③ 주관부서는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인사, 교무, 단과대학, 소속 학과/부서 등)에 통보하고, 관련부서는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인사발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 창업자는 창업에 관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을 수행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창업대상기술의 요건) ① 교직원 창업대상기술은 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자 또는 타인이 과학기술원에서 근무 중에 개발하거나 취득한 기술)로서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한한다.

② 제 1항 중 기술은 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 중 참여기업이 실시권을 포기하였거나 참여 기업에 실시권이 없는 기술을 포함한다.

제 8 조 (기술실시계약체결) ① 제 6조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 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과학기술원과 체결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창업기업이 창업대상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원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 9 조 (교직원창업자의 겸직 및 휴직) ① 과학기술원 교직원은 창업을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학과/전공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겸직기간은 최초 신청 시 2년 이내로 하고, 학과/전공 교원인사심의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② 겸직 또는 휴직이 종료되는 창업자가 겸직 또는 휴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이전에 주관부서에 겸직 또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겸직 및 휴직된 창업자가 복직하거나 겸직이 종료되는 경우 총장은 겸직 및 휴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 10 조 (교직원창업자의 복무)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 휴직하는 교원은 학과/전공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강의(휴직의 경우 제외), 학생지도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받는다.

1. 창업자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분야와 유사할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창업자로서 외부 수탁연구를 수행할 경우 위탁기관의 양해 후에 당해 연구비를 창업기업의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 (교직원창업자의 보수)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한 교직원에게는 급여규정 및 연봉제시행지침에 따른 제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겸직 2년차 이후 정액급의 70%, 4년차부터 정액급의 50%를 지급하며 정액급 연동항목도 이에 준한다.

제 12 조 (교직원창업자의 창업 고지 의무) 제 2 조 3 호의 교직원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원은 반드시 제 5 조 내지 제 6 조의 절차를 거쳐 창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과학기술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과학기술원은 교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사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취득한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과학기술원의 기술사업화에 사용하여야한다.

제 13 조 (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원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과학기술원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과학기술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 14 조 (교직원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겸직기간 내의 교원 창업자에게는 강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은 교직원 창업기업에게 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기타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비용 등은 교원 창업기업이 부담하되, 비용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원 내부인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며, 사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창업보육 전용공간의 사용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 15 조 (창업 승인의 철회) ① 과학기술원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과학기술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 8 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7. 창업겸직 교원의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대상기술의 허여 결정 및 교원의 휴/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양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양도 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과학기술원은 지식재산권의 사용조건, 대가, 기간 등을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해야한다.
3. 과학기술원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과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교직원 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 ② 교직원 창업자는 승인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 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생창업

제 18 조 (학생창업) 학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과 동등하게 지원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기타

제 19 조 (통계의 관리 등) 과학기술원의 주관부서는 교직원·학생 창업신청 및 승인에 관한 자료(신청 대비 승인 비율 등) 와 창업기업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제 규정과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규정, 기타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1 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8.12.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5>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28>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2>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28>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3.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12.27>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